

學校法人 信一學園 理事會 會議錄
(2023학년도 제1차)

회의소집통보일자	2023. 3. 22.		
이사정수	10	재적이사	10

1. 일 시 : 2023년 3월 30일(목요일) 오후 2시
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20 학교법인 신일학원 회의실

3. 출석이사(7명) :

이사장 이상균,
이사 박병대, 이사 박영국, 이사 서유석
이사 이영춘, 이사 이철구, 이사 정두현
(가나다순)

4. 출석감사(1명) : 김학신

5. 결석이사(3명) : 김윤희, 이세옹, 이원희

6. 결석감사(1명) : 최문규

7. 회의안건

- 1)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(안) 승인의 건
- 2)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사직 처리의 건
- 3) 서울사이버대학교 전임교원 전보임용의 건
- 4) 기타안건

8. 회의진행

이상균 이사장은 법인사무직원으로부터 재적이사 10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됨을 보고 받고 개회를 선언하다. 이어서 박영국 이사의 개회기도가 있은 후 의장은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하다.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자회의록 낭독이 있은 후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 없이 한다.

이상균	박영국	박병대	이영춘
정두현	이철구	김학신	서유석

9. 안건심의

이 사 장 : 제1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(안) 승인의 건을 논의하여 줄 것을 제의하고, 법인사무직원에게 상세설명을 요청하다.

법인사무직원 : 배포된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 변경과 휴직의 사유(육아휴직) 문구 수정을 위해 붙임1.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·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.

박 영 국 이사 : 학교 운영을 위한 법과 규정에 따른 정관 변경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다.

정 두 현 이사 : 박영국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.

이 영 춘 이사 : 정두현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.

이 사 장 : 정두현 이사의 동의와 이영춘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. 이에 이사장은 제1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(안) 승인의 건은 원안(붙임 1.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·구조문대비표)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.

이 사 장 : 제2호의안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사직 처리의 건을 논의하여 줄 것을 제의하고, 현 강인 총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2023년 3월 31일부 총장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설명하다.

이 영 춘 이사 : 강인 총장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, 부득이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희망한다고 하니 이를 받아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고, 안정적인 학사일정을 위해 행정 절차에 따라 총장 임용(면직) 및 정관(총장 임기) 변경을 교육부에 보고하고, 조속히 후임 총장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.

이 철 구 이사 : 이영춘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.

서 유 석 이사 : 이철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.

이 사 장 : 이철구 이사의 동의와 서유석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. 이에 이사장은 제2호의안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사직 처리의 건은 강인 총장의 2023년 3월 31일부 총장직 사직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.

이 사 장 : 제3호의안 서울사이버대학교 전임교원 전보임용의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, 행정부총장에게 상세설명을 요청하다.

행 정 부 총 장 : 총장을 사임하는 강인 교수의 경우 2021년 총장취임 전 승인받은 교원 임용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2025년 3월 31일까지 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, 내부순환 및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노인복지 전공에서 사회복지전공으로 2023년 4월 1일부 소속변경(전보) 임용하고

이상진	박영국	박병대	이영춘
정두현	이철구	김동수	서유석

박 병 대 이 사 :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다.

이 영 춘 이 사 : 박병대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.

서 유 석 이 사 : 이영춘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.

이 사 장 : 이영춘 이사의 동의와 서유석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. 이에 이사장은 제3호 의안 서울사이버대학교 전임교원 전보 임용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.

10. 폐 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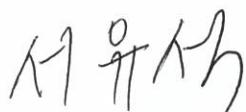
의장이 다른 기타 부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철구 이사의 폐회 동의와 정두현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폐회를 선언하다. 이어서 박영국 이사가 폐회기도를 마치니 동일 오후 2시 30분이 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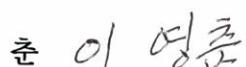
2023년 3월 30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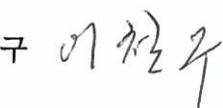
이 사 장 이 상 균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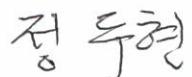
이 사 박 병 대 

이 사 박 영 국 

이 사 서 유 석 

이 사 이 영 춘 

이 사 이 철 구 

이 사 정 두 현 

감 사 김 학 신 

(가나다 순)

불임 1.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·구조문대비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34조(임용) ① <생 락> ② 각 학교의 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생 락> 2. <생 락> 3.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경우 임기는 <u>3년</u> 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 ③ ~ ⑥ <생 락>	제34조(임용) ① <생 락> ② 각 학교의 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현행과 같음> 2. <현행과 같음> 3.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경우 임기는 <u>2년</u> 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 ③ ~ ⑥ <현행과 같음>	· 사립학교법 제53조(학교의 임용) 제③항 적용
제35조(휴직의 사유) 1 ~ 6. <생 락> 7. <u>만 8세 이하(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)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하게 된 때</u> 7의2 ~ 12. <생 락>	제35조(휴직의 사유) 1 ~ 6. <현행과 같음> 7. <u>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</u> 7의2 ~ 12. <현행과 같음>	· 사립학교법 제59조(휴직의 사유) 제①항 제7호 적용
	부 칙	이 정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전수현	2023. 4. 1. 개정	이영준 유기수
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